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59회 제2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2. 12. 9.(금)

| 순서 | 검 토 안 건 | 제 안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 |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구청장 |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2. 11. 15.
- 회부일 : 2022. 11. 18. (의안번호 : 22 - 111)

2. 제안이유

- 「주민투표법」 개정(2022. 4. 26. 공포)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(안 제2조 및 제8조)
-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(안 제3조)
-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(안 제4조)
-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(안 제8조 및 제10조)
- 통·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(안 제 8조)
-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(안 제12조 및 제13조)

4. 관계법령

- 「주민투표법」

5. 검토보고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「주민투표법」 개정(2022. 4. 26. 공포)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내용으로 (안 제2조 및 제8조)에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
- (안 제3조)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
- (안 제4조)에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
- (안 제8조 및 제10조)에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
- (안 제 8조)에 통·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
- (안 제12조 및 제13조)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

- 검토의견으로는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주민투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·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